

# 2021년도 제7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4. 14.(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김경숙, 노정동, 박성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70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강나래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634건(안건번호 제2021-36035호~36538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36035호~36055호(순번 1번~12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상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36056호~36076호(순번 22번~42번)는 티스토리나 네이버 블로그에서 다수의 일본 애니메이션을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36077호(순번 43번)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영상물 없이 우리말 자막파일만 제공한 사안임. 영리 목적이 없는 마니아층이 취미 공유의 목적으로 자막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아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1-36494호~36538호(순번 460번~504번)는 웹하드 사이트와 네이버 밴드에서 최신 영화를 제공한 사안으로, 해당 영화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536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7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1-70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은 5쪽의 저작물명, 6쪽의 게시판명, 9쪽의 OSP명, 저작물명, 게시물명, 게시판명, 10쪽의 OSP명, 심의대상 URL, 게시자 아이디, 저작물명, 11쪽의 OSP명, 심의대상 URL, 12쪽의 OSP명, 저작물명, 13쪽의 OSP명, 게시물 내용, 14쪽의 저작물명, 게시물명, URL, OSP명, 15쪽의 OSP명, 블로그명, 게시자 아이디 및 닉네임, 블로그 소개글, 게시물명, 저작물명, 댓글 내용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제1호 안건의 해당 부분은 민원인 신고 건으로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는 저작물명, 블로그명, 게시물명, 게시판명, 심의대상 URL, OSP명, 게시자 아이디 및 닉네임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 3. 안전상정

####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C, A, B, D 위원: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0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634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특히 법리에 관해서는 검토보고서의 하급심 판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21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다수의 만화 불법복제물을 무료 내지 70 포인트에 제공한 사안임. 총 게시물은 22건임.

(순번 7번 채증 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1화~82-2화를

7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게시물 이미지 내에 “☆☆☆☆ ☆☆☆ ☆☆☆”라는 워터마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불법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재업로드한 것으로 보임.

(순번 21번 채증 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15권을 전자책으로 구입 후 직접 스캔하여 zip 파일 형태로 무료로 제공한 사안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이 타당함.
- C, B, A 위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21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2번~42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티스토리과 네이버 블로그 이용자들이 다수의 일본 애니메이션을 각각 스트리밍으로 제공한 사안임. 총 27개 게시물임.  
(순번 29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네이버 블로그에서 해당 저작물의 858화 전체 분량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

공하고 있음.

(순번 39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네이버 블로그에서 해당 저작물의 193화 전체 분량을 우리말 자막, 자막파일(srt)과 함께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가결 의견임.
- B, D, C 위원: 이견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2번~42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3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네이버 블로그 이용자가 일본 애니메이션 '☆☆☆' 191화, 192화 자막파일(srt)을 영상저작물 없이 게시한 사안임. 게시물은 총 2건임.  
해당 애니메이션 저작물은 일본 'TV도쿄'에서 2017. 4. 5.부터 현재

까지 방영중이며, 우리나라 '투니버스'에서 2017. 7. 22.부터 2020. 7. 16.까지 156화에 걸쳐 방영하였음.

심의대상 게시물 본문의 “☆☆ ☆☆☆ ☆☆☆ ☆☆ ☆☆☆☆ ☆☆☆ ☆ ☆☆☆☆ ☆ ☆☆☆☆”이라는 내용에 비추어 보아, 게시자가 직접 번역한 것으로 판단됨.

심의대상 게시물은 원저작물의 전체 분량을 2차적저작물로 작성하여 전송 중이라는 점이 인정되나, 자막을 무료로 제공 중이며 광고 목적의 배너 게시 등 영리성이 인정되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음. 심의대상 자막파일은 불법복제된 애니메이션 영상저작물과 결합하여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은 사실이나, 해당 애니메이션은 현재 국내에서는 정식 수입되지 아니하여 우리말 자막과 함께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됨.

과거 우리 심의위원회는 '영리 목적이 없는 마니아층의 취미 공유로서의 자막 전송'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사안의 경우 그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부결한 바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의 자막파일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불법복제물의 이용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인정되나, 해당 애니메이션의 국내 수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영리 목적이 없는 마니아층의 취미 공유로서의 자막 전송임이 인정되는 점, 순번 39번의 시정권고를 통하여 게시자에 대한 저작권법 준수 안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아 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국내 방송사에서는 해당 저작물을 방영하고 있지 않은지?
- 강나래 전문위원: 국내 방송사 '투니버스'에서 정식으로 수입하여 시즌 3의 마지막화인 156화까지 방영하였으나, 이후 수입이 중단된 것으로 보임. 국내 OTT 서비스 및 네이버 시리즈 ON에서도 시즌 3까지만 제공 중임. 심의대상 자막파일은 191화, 192화의 자막파일로 국내 합법 시장에서는 제공되지 아니하는 회차임이 확인됨.  
우리나라에서 해당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서는 외국의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우리말 자막은 제공되지 아니함.
- 오진해 전문위원: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이 지연되어 국내로의 애니메이션 수입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됨.
- A 위원: 영리 목적이 없는 마니아층이 취미 공유의 목적으로 자막을 공중 이용에 제공함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 의견임.
- B 위원: 해당 애니메이션은 현재 국내에서는 정식 수입되지 아니하여 우리말 자막과 함께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국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하여 전송중단의 시정권고 대상으로 확정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여 부결 의견임.

- C 위원: 영리 목적 없이 일본 애니메이션 자막파일만 게시한 사안에 대하여, 과거 심의위원회의 합치된 판단 기준에 따라 시정조치 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함. 만장일치로 순번 43번은 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44번~504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수는 536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음악 'When we disco'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78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음악 'When we disco'를 2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에서는 해당 저작물을 mp3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2020. 8. 12.에 발매한 디지털 싱글 댄스 음악으로써, 작사·작곡·실연자 모두 박진영임. 2021. 4. 13. 기준 멜론 사이트 음원 차트 순위 62위임. (영화 '맹크'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91번은 모바일 웹하드에서 방송 '맹크'를 무료로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영화 전체 분량인 약 2시간 12분을 제공하고 있음. 2020. 12. 4.에 공개한 미국 영화로써, 넷플릭스에서 유료회원 가입 후 시청 가능함. (방송 '타임즈'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35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방송 '타임즈'를 535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2021. 2. 20.,

21., 27.에 방영한 1화~3화를 mp4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방송 한화 전체 분량인 약 1시간 4분을 제공함. OCN에서 2021. 2. 20.부터 3. 28.까지 총 12부작 방영하였으며,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한화당 2,200원 대여 가능함.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60번~504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긴급대응저작물에 대한 신속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2021. 4. 9. 오후 5시 넷플릭스에서 최초 공개된 우리나라 영화 '낙원의 밤'이 공개와 동시에 불법복제물이 유통됨에 따라 보호원은 해당 저작물의 불법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 심의를 요청함. 심의일 기준 오전 9시까지 심의 요청된 총 47개 게시물을 추가하여 보고 드리겠음.

(순번 460번 채증 자료를 제시하면서)모바일 웹하드에서 최신 영화 '낙원의 밤'을 380 캐시에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영화 전체 분량을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순번 486번 채증 자료를 제시하면서)네이버 밴드에서 최신 영화 '낙원의 밤'을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영화 전체 분량을 mp4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A, C, D 위원: 순번 44번~504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

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4번~504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36077호(순번 43번)는 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1-36035호~36076호(순번 1번~42번), 제2021-36078호~36538호(순번 44번~504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3. 폐회 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7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7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4. 21.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김경숙

위원 노정동

위원 박성호